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. 4. 28 선고 2019가단7302 판결 [압류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

특별대리인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4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97. 3. 31. 접수 제6382호 및 제6383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남인수

별지